

## 임업 정책에 바란다

李在石  
농림수산정책지문위원

임업이 지금처럼 침체된적이 없었다. 조림을 한 산이 조림을하지않은 산보다 싸서 무수한 조림가들을 울리고 있고 임산업을 전문으로 하던 임산업자도 없어진지 오래며 기업양묘도 조림 물량의 감소로 그 수량이 급격히 줄어인데다가 산림조합이 절반 가량을 하다 보니 앞으로 양묘의 전문화도 문제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물 가공업도 임산물 가공품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임업이 침체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그이유가 내부적 요인에 의한것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것, 두가지로 크게나눌수 있을것이다.

물론 개방화 시대를 맞아 거의 완전 개방된 임산물이 항구마다 쌓여서 국내 임업을 보호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니나 보다 문제가 되는것은 내부적 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내부적 요인인즉 임업 정책에 연유함이 더욱 크다고 보는것이다.

지금은 비단 임업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가 기초적(基調的)인 전환기와 경제민주화

를 추구해야 할 전환기를 맞아 정책수립과 집행은 대단히 어려운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임업 정책이 더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것이다.

그래서 임업정책도 우선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제도적 장치로서 근자 해묵은 산림법 개정안을 임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임업을 하나의 건전한 산업으로 자라게 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하겠다.

이것을 지면 관계로 이곳에 다 기술할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각 산업분야가 공히 구조적 문제에 부닥쳐 있는것과 같이 이 임업도 그 구조적 모순을 탈피할 방법론이 제시 되지 못한것은 문제점중의 문제점이다.

뿐만아니라 임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을 비롯하여 산불이다 병충해다 법정제한림 등의 임업 위해(危害)에 대한 임업 안정대책에 손을 대지 못했다.

국유림의 경영관리도 시대 흐름에 따라 일대 방향 전환을 가지고 와야 할시점에서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

이와는 반대로 임업구조 개선과 소유구조 개선의 장애요인이 되는 임야매매 증명제도를 산림법 개정안에 내놓고 있다.

또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개인 기업으로 얼마든지 조장하고 육성할수 있는 성질의 것을 공법인에게 주기 위한 법령 제정과 시책에 힘을 드리고 있는것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일들이다.

지금 산림정책이 우선 손을 써야할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림의 합리적 경영관리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국유림이고 민유림이고간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산림보호라는 소극적인 산림 경영체제에서 탈피 할때가 되었다.

이제 국유림도 개방 할 때가 된것이다. 국유림내에도 콘도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고 낚시터도 만들고 휴양위락시설도 하고 목야지도 만들어 대여하고 하여 국민의 휴식공간 확대는 물론 국유림을 다각용림(多角用林)으로 만들어 수입을 올리고 채산성을 유지해야한다.

이렇게 하자면 지금 경직된 공무원으로서는 이 일을 맡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유림 관리 공단을 만들어 산림의 다각용림의 시범을 민유림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도록 해 줄 의무와 책임이 오늘의 산림정책 담당자에게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유림 관리공단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것은 민유림의 입지와 임산물의 시장성(市場性)이 앞뒤로 다 막혀 있는 숨통을 터 주는 일이다.

지금 산림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묶여 있고 또 산림법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임야매매증명제도까지 설상가상으로 제도화 된다면 산림을 가진 사람들이 숨을 쉴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민유림에서 가장 화급을 요하는 사항은 입지와 임목의 시장성을 터 주는 일이다.

내가 가진 산이나 내가 조림한 산이 언제 어디서나 시장에 내놓았을 때 적당한 가격으로 팔리고 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거래소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조림한 산이 조림 안한산보다 더 싼것과 임야투기가 일어나는것들은 이것이다 그 원인이 산림시장이 건재하지 못한데 있다.

산림을 둘러싼 모든법이나 규정은 산림거래를 방해하는 규정이지 산림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어 입지 임목의 가격 안정은 물론 나아가서는 산림의 소유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은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실정이다.

요사이 농업재해 문제가 심심찮게 신문에 보도되어 농업재해보상이 거론 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재해보다 산림재해가 더 문제가 된다.

수십년을 공들여 가꾼 임목이 일조일석에 잿더미가 되는 산림재해인즉 이것이야말로 국영 산림보험법이 제정되어 임업을 안심하고 영위할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요사이 산불은 행정 책임문제가 있어 산불상황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통계상의 산불과 실체는 거리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것은 임업노동 문제다.

수입농산물이 개방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공 병진 정책으로 농촌에 공장이 들어오고 있어 농촌의 실정은 임업노동구하기가 크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임업 전업노동자의 확보 방안이 임업 앞에 떨어진 당면한 고민이다.

따라서 임업노동 확보 방안도 따로 법을 제정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형편에 있다.

지금은 임업의 구조 모순에다 산에 조림을 해야 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임업노동력은 구하기가 힘들고 산을 가진 사람들이 산을 팔기도 어렵고 언제 산불이 날지 또 법정 제한림으로 편입될지 모르는이 상황에서 서서 임업을 생각한다는것은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사방으로 막힌 구멍을 터주고 물이 낮은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임업의 현안 문제를 하나 하나 손을 써야 할때라고 본다.